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114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1,978원과 그 중 8,623,037원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1. 9. 1.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2. 7.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은행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B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7. 6. B은행에게 8,623,03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가지급금 1,248,941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자율은 연 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9,871,978원(= 대위변제금 8,623,037원 + 가지급금 1,248,941원)과 그 중 8,623,0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7.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순남